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

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10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
식재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의 영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3. 개정이유

○ 조례 제명을 현행 「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·보완하여,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
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

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용어정의 추가(안 제2조)

○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3조)

○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
○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
○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
○ 정보공개 신설(안 제8조)

○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신설(안 제9조)

○ 만족도 조사 신설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우수 식재료 사용과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 권장, 공동구매 활성화와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사후 평가,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공개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·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및 안전 관리가 향상되고, 학교급식 관련 정보 공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
○ 본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상호 소통하는 투명한 학교급식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,

○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본 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전달과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